

#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(김호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29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4월 02일  
발 의 자 : 김호진 의원(1명)  
찬 성 자 : 경만선, 김인제, 김춘례,  
문병훈, 안광석, 오한아,  
우형찬, 이승미, 조상호,  
황규복 의원(10명)

## 1. 제안이유

- 도로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업무처리 시 가산금 징수 및 독촉과 관련하여 준용하고 있는 「국세징수법」 제21조가 삭제(2018.12.31.개정)되고, 조례 내 또 다른 준용규정에서는 가산금 부과·징수 등에 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근거법령을 일치해 조례적용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점용료 등의 가산금 징수 및 독촉 업무처리 시 준용하고 있는 「국세징수법」을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변경(안 제8조제1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세징수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내용 중 “「국세징수법」 제21조 및 제23조”를 “「지방세징수법」 제30조 및 제32조”로 변경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)</p> <p>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.이 경우,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「<u>국세징수법</u>」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8조(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「<u>지방세징수법</u>」 제30조 및 제32조----- ----- -----</p>